

예 산 총 칙

2026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836,968,044	55,109,041
일반회계		1,645,207,526	49,356,226
특별회계		191,760,518	5,752,816
	공기업특별회계	85,034,868	2,551,04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0,054,106	1,501,62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4,980,762	1,049,423
	기타특별회계	106,725,650	3,201,770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1,467,041	44,01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642,914	169,287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8,550,253	1,156,508
	주택사업특별회계	41,834	1,25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85,920	17,578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특별회계	43,889,739	1,316,692
	주차장특별회계	16,501,105	495,033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46,844	1,405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이월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81,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